

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번	안 호	22-85
--------	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: 2022. 9.

제 출 자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치매관리법」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마포구 치매지원센터를 마포구 치매안심센터로 명칭 변경
- 나.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 삭제

4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1) 「치매관리법」 제17조(치매안심센터의 설치)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2. 7. 28. ~ 8. 17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3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
[법무팀 의견]

관 계 법 령	「치매관리법」
법무팀 검토의견	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.
참고사항	「치매관리법」 제17조(치매안심센터의 설치) ① 시·군·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(이하 “치매안심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목제명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역보건법」 제11조 및 「치매관리법」 제3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의 설치 및 관리·운영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”으로 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(설치)”를 “(설치 및 기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이 조례에 의한 치매검진 및 예방사업 등을 지원하기”를 “치매검진, 치매예방,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”로, “치매지원센터(이하 “치매지원센터””를 “치매안심센터(이하 “센터””로, “정하여 사용”을 “사용”으로 한다.

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센터는 「치매관리법」 제17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한다.

제3조를 삭제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치매지원센터”를 “센터”로, “위탁운영”을 “위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치매지원센터”를 “센터”로 한다.

제5조의2를 삭제한다.

제5조의3을 삭제한다.

제5조의4제1항 중 “수탁자를”을 “센터의 수탁자들”로, “치매지원센터 수탁자

선정위원회(이하 . . 위원회 . .)를 “치매안심센터 수탁자선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구성하고”를 “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의”를 “다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1~2명”을 “2명 이내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1~3명”을 “3명 이내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전체위원”을 “전체위원 수”로, “이하”를 “이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 단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센터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수탁자산을 사업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,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.
-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협약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,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치매지원센터”를 각각 “센터”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(“위탁의 취소”)를 (“위탁의 취소 등”)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”를 “해당할 때에는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일체”를 “수탁

재산 일체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그러하지 아니하다”를 “그렇지 않다”로 한다.

1. 수탁자가 제6조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8조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

제9조를 삭제한다.

제10조를 삭제한다.

제14조 중 “치매지원센터”를 “센터”로, “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”을 “예산의 범위”로 한다.

제15조를 삭제한다.

제16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센터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·운영 중인 치매지원센터는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치매안심센터로 본다.

제3조(운영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을 위탁 중인 센터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되, 위탁기간은 종전의 위탁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보건법」 제11조 및 「치매관리법」 제3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위한 <u>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의 설치 및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설치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“이라 한다)은 이 조례에 의한 <u>치매검진 및 예방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(이하 “치매지원센터“라 한다)를 설치하되,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<p>제3조(기능) <u>치매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u></p> <p>1. 치매 예방사업(교육, 홍보, 상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<u>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2조(설치 및 기능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 <u>치매검진, 치매예방,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----- 치매안심센터(이하 “센터“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사용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센터는 「치매관리법」 제17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제3조(기능) <u><삭 제></u></p>

답)

2. 치매 인식개선사업(조기검진, 조기치료의 유도)

3. 치매 조기검진사업(선별검진, 정밀검진, 감별확진 지원)

4. 치매 등록·관리사업(사례관리, 환자지원 및 가족지원 서비스 등)

5. 치매 치료비 지원사업(저소득 환자 투약치료, 본인 부담금 지원)

6. 치매 지역 조사사업(치매 관련 자원실태, 치매 관련 주민 요구도 등)

7. 치매지원센터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, 주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

8. 지역사회 치매인프라 강화(의뢰·지원체계구축, 시설종사자교육 등)

9. 인지건강센터 운영(인지재활, 치매예방, 기억증진 프로그램 등)

10.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업

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구청장은 치매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운

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---
----- 센터-----

----- 위탁---

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치매지원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, 위탁기간, 위탁조건, 관리책임,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5조의2(수탁자 선정기준)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·기구·장비·시설 및 기술수준
2. 재정적인 부담능력
3. 책임능력 및 공신력
4.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

제5조의3(수탁자 선정) ① 제5조2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, 제5조의4에 따른 수탁자선정위원

-----.

② ----- 센터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5조의2(수탁자 선정기준) <삭제>

제5조의3(수탁자 선정) 삭제

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.

제5조의4(수탁자선정위원회) ①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수탁자선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.

③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학계, 법조계, 언론계 등 전문가 : 1~2명
2. 치매관리분야 전문가 및 주민대표 : 1~3명
3. (생략)
4. 관계 공무원(단,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.)

④ (생략)

⑤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의4(수탁자선정위원회) ① 센터의 수탁자를 -----
----- 치매안심센터 수탁자선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
-----.

② -----
-----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-----
-----.

③ ---- 다음 -----
-----.

1. ----- 2
명 이내

2. -----
- 3명 이내

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전체위원 수
----- 이내-----

④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<신 설>

제6조(수탁자의 의무) 수탁자는 수탁받은 치매지원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수탁자는 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치매지원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2. 수탁자는 보조금과 수탁자산을 사업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.
3.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 단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센터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수탁자산을 사업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,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.

<신 설>

제7조(시설의 운영) ① 수탁자는 치매지원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, 고령자를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사업을 관리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치매지원센터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.

제8조(위탁의 취소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와 제10조의 지도·감독관련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때

2. 3. (생략)

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, 각종시설, 자료,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수탁자가

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협약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,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제7조(시설의 운영) ① -----
센터-----

-----.

② ----- 센터-----

-----.

제8조(위탁의 취소 등) ① -----
----- 해당
할 때에는 -----
-----.

1. 수탁자가 제6조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8조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

2. 3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수탁재산 일체-----.

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는
그러하지 아니하다.

----- 그렇지 않다.

제9조(운영비 지원) 구청장은 제5
조에 따라 관리·운영을 위탁한
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
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장비
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운영비 지원) <삭 제>

제10조(지도 및 감독) ① 구청장
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
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
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의 지
도·감독에 필요한 시설, 서류
등을 점검할 수 있다.

제10조(지도 및 감독) 삭제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
· 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
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
될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
치를 할 수 있다.

제14조(자원봉사) 수탁자는 치매
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
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·활
용하고,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
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
수 있다.

제14조(자원봉사) ----- 센터---

----- 예산의 범위-----

-----.

제15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
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지역
보건법」·「서울특별시 마포
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

제15조(준용) <삭 제>

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
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
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
한다.

제16조(시행규칙) <삭 제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
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센터 명칭 변경에 관한 경
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
의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설
치·운영 중인 치매지원센터는
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
치매안심센터로 본다.

제3조(운영 위탁에 관한 경과조
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을
위탁 중인 센터의 위탁계약은
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되,
위탁기간은 종전의 위탁계약
체결 당시 계약기간의 잔여기
간으로 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 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는 「치매관리법」 개정과 관련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보건소 건강증진과 차은지
연 락 처	02-3153-9062